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이윤철* · 여숙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상교통정보학과 대학원

A Study on Reform for Subordinate Laws of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Lee, Yun-cheol* · Yeo, Sook-Kyung**

* , **Divis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3월에 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도입과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과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수상레저기구, 등기, 등록, 안전검사, 수상레저보험, 선박법, 선박안전법

ABSTRACT : Small vessels of less than 20 tonnage and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sailing yachts, water motorcycle, etc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Marine Leisure Safety Act, Ship Act and Ship Safety Act for a long time in Korea. As a result,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ats have remained within the blind area of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mong these vessels and boats, some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of 20 horse power or more(excluding motor boats equipped with engine inside the vehicles), water motorcycles and rubber boats of 30 horse power or more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through the registry, safety inspection, insurance early 2005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ational Acts concerned, I consider the conflicts between Acts and suggest the subordinate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KEY WORDS : Marine Leisure Safety Act,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registry, safety inspection, marine leisure insurance, Ship Act, Ship Safety Act,

1. 서 론

주 5일제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우리나라 수상레저안전법이 2005년 3월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과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대표저자 : lyc@mail.hhu.ac.kr, 051)410-4249

**여숙경, india316@nate.com, 051)410-4089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 수상레저안전법은 총 8개장과 59개 조문, 그리고 부칙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3월 31일에 법률 제7478호로 제정·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 후인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조종면허, 안전준수의무, 안전관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 수상레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도입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형동력선박에 대해 등록과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히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 법은 첫째,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둘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셋째,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개관하고,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공법상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과 사법상의 수상레저보험제도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상의 개정방향과의 문제점을 차별화 함으로써 건전한 수상레저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주요내용

2.1 조종면허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가운데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은 일반 조종면허 제1급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2급조종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트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과 기타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고,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 교부된다(법 제4조 및 제6조).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험대행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그 밖의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때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의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밖의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취소, 정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4조).

또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민원인에게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업무정지처분에 같은한 재산적 제재를 가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당해 시험대행기관 응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같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밖의 과징금의 금액 등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을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이에

대한 유사 입법례로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해운법 제22조(과징금처분) 등이 있다.

한편, 수상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상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이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 안전교육면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동의 등의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레저활동의 형태, 레저기구의 종류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동의·구명복 또는 헬멧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법 제13조 및 규칙 제10조). 또한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시행령안 제16조).

i)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ii)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iii) 폭풍·호우·폭풍우·대설·폭풍설·해일·파랑·태풍과 관련된 주의보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iv)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음향·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v)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vi)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vii)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월당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실종·중상을 당한 때에는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첫째,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둘째,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셋째,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넷째,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을 자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안 제16조).

누구든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부활, 소화기, 자기점멸등 등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안 제19조).

한편, 안전준수의무와 관련하여 주취중 조종금지에 추가하여 개정법에서 신설된 내용으로서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금지(법 제23조) 및 정원초과 금지(법 제24조 및 시행령안 제19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상레저활동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탑승시켜 운항하여서도 아니 된다.

2.3 안전관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에 세 첫째,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둘째,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셋째,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26조).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

축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법 제29조).

2.4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등록요건,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 및 시행령안 제23조, 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31조),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말소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33조, 시행령안 제25조, 시행규칙안 제21조). 이러한 등록에 관한 제 규정은 등록대상을 현행 선박법에서 제외되어 검사 등이 배제된 선박과 한시적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농선(農船), 작업선, 운반선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수상레저보험과 관련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34조 및 시행령안 제26조).¹⁾ 이와 관련하여 여객운송 중 사고로 여객에게 입힌 신체장애 등 손해보상을 위하여 유·도선업자는 유·도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낚시어선업자와 수상레저사업자도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입해 오고 있는 책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특히 개인용 해양레저활동자의 경우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요트,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의 운항 중 사고발생시 제3자 배상, 선체손상, 탑승자상해, 충돌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레저종합보험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²⁾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개인 수상레저활동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1) 유사법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강제)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책임보험 등)가 있고,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의 경우 개인소유자에게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2)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및 시행규칙안 제27조). 3)

안전검사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검사대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8조 제1항, 제2항).⁴⁾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수상레저기구 검사원의 수, 검사시설, 장비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38조 제5항 및 시행령안 제27, 28조).

2.5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해수면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리고 내수면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9조). 또 계절적 영향을 받기 쉬운 수상레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수기 이후 실질적인 휴업이나 폐업을하도록 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2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 등의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1조, 시행규칙안 제37조). 한편,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⁵⁾에 의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

3) 관련 국내법으로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내지 제45조와 선박안전법 제1조의2가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일본에서는 20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안전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에서는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검사수검시 보험료가 할인 적용되고 있다.

4) 관련 국내법으로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 대행자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83조(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 대행자 지정신청 등)가 있다.

5) 자동차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동체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

다6)(법 제44조, 시행령안 제29조).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의 안전점검,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영업구역 안에서의 사고발생시 그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의 통보,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전 안전교육,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8조). 이 때의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안 제29조).

i) 14세미만인 자⁷⁾, 술에 위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행위

ii)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키는 행위

iii)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iv)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v)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vi)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⁸⁾을 이용자가 탑승한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첫째, 기상·수상상태가 악화된 때, 둘째, 수상사고가 발생한 때, 셋째, 기타 수

1. 사망한 경우에는 8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를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6) 보험법은 제10장(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 165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자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가운데 해양에 관련된 조항은 제4~6항, 제8항 및 제10~12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손해보험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i) 선원법 제98조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ii) 제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iii)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iv)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어염손해배상보장계약

v)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vi)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항공보험계약

vii) 낚시어선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7)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8) “대통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장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50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는 전문검사 대행기관에 하는데, 무동력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사업장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안전검사 부담 경감 및 시설물 등 제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및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5조). 또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검정,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7조 및 시행령안 제34, 35, 36, 37조). 한편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기구 등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고, 이러한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법 제46조, 시행령안 제31, 32, 33조).

3.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3.1 총칙

현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의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에서 모터보트(motor boat), 요트(yacht),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고무보트(rubber boat), 스쿠터(scooter),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수상스키(water ski), 패러세일(parasail), 조정(rowing boat), 카약(kayak), 카누(canoe), 워터슬리드(water sled), 수상자전거(pedal boat), 서프보드(surf board), 노보트(paddle boat)의 1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기구의 다양화, 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기구로서 15가지의 기구(제1호~제15호)와 유사한 구조·형태·운항방식을 가진 기구를 추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 제2조에서 레저기구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였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게 되어 규제적 성격이 강해지는 듯하나, 어떤 형태의 레저기구이든 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이상 법령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2 조종면허

3.2.1 면허시험의 면제(법 제7조)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와 수상레저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찰, 군 및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교육·훈련과 민간단체의 전문성 및 자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조종면허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하였다(시행령안 제7조).

3.2.2 수상안전교육(법 제10조)

개정법 제10조의 신설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으로 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재차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안전교육을 면제하여, 법 제9조의 생신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수상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8조).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을 현행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행함이 시간절약 및 민원인의 편의성에 적합하므로 그 지정기준을 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시설·설비기준은 안전교육장(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50m² 이상), 행정실(10m² 이상),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주차장(승용차 20대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양사고의 주원인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운전미숙에서 야기되는 인적과실인 점을 감안하여 해상에서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처방법 등 수상에서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3시간 이내의 강의 및 시청각 교육과 강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강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안전교육 강사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영은 3시간 이내의 교육과정을 매월 2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교육 강사는 연 1회 이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이다(시행령안 제9조). 규정된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교부받는다((시행규칙안 제6조). 강사기준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1. 해양경찰관서 또는 시·군·구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업무, 2. 대학에서 수상레저활동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3. 시험대행기관에서의 책임운영자 또는 시험관 업무, 4. 기타 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시행규칙안 제5조).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1. 교육장 시설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규정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안 제7조).

수상안전교육 위탁업무를 투명하게 이행토록하기 위하여 위

탁기관의 불법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즉 해양경찰청장은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행령안 제9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 4. 지정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관하여 개선·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개선·보완기간, 내용, 개선·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안 제10조). 이와 관련한 절차로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통지는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시행규칙안 제8조).

2005년 5월 15일 경기 화성시 입파도 근해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레저보트 전복·침몰로 7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사고 이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도 안전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수상안전교육의 도입으로 레저보트 유경험자의 사고사례 등의 전파 등이 용이하며, 초보자의 사고예방 효과에 기대할 수 있는 등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2.3 면허증의 교부(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법 제9조 조종면허증 갱신 신설과 법 제12조 면허증 휴대의무 신설에 따라 면허 반납 후 면허취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교부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규칙안 제9조에서 개정하였다.

해양경찰서장은 면허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일부터(재교부의 경우에는 재교부 요구한 때로부터, 조종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갱신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만약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갱신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에 1.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2. 사진(가로 : 2.5센티미터, 세로 : 3.5센티미터), 3. 수상안전교육필증(갱신받고자하는 때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해양경찰서장은 재교부 또는 갱신신청한 자가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는 사진 1매를 제출받아 면허증재(갱신)교부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면허증을 즉시 재교부하거나 갱신 교부한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경찰서장은 면허증을 교부하거나 재교부 또는 갱신 교부하는 때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대장 또는 면허증재교부대장, 면허증갱신교부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2.4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법 제14조)

면허시험대행기관에 관하여 지정취소 규정만 두었으나 응시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업무정지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에 관하여 시험대행기관을 '정지'할 수 있고,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보완할 것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명할 수 있고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시험대행기관을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 계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12조, 시행규칙안 제13조 제2항).

3.2.5 과징금 처분(법 제15조)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민원인에게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재산적 제재를 가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법 제15조에서 신설했는데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안 제13조~제15조에서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징금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고자 과징금의 가중 및 감경 규정을 두었다.

시험대행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이 다르다. 단 해양경찰청장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13조).

과징금 부과시 해양경찰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 납부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시행령안 제14조). 만약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시행령안 제15조).

3.3 안전준수의무

3.3.1 안전장비의 착용(법 제17조)

수상레저활동시 기본 인명안전장비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대한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명안전장비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호각 및 구명동의등(燈)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시행규칙안 제15조).

3.3.2 원거리수상레저활동의 신고(법 제19조)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가 없어 레저활동자의 인적사항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 의무기준을 출항지기를 기준으로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개정하였다(시행규칙안 제16조).

3.3.3 운항규칙(법 제18조)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조항에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상레저활동자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시행령안 제16조).

3.3.4 무면허조종의 금지(법 제20조)

법 제20조에서 무면허조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 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의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1급조종면허소지자로서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주취조종 또는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조종이 아닌 상태만 예외로 인정하여 동승자 요구 강화를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시행규칙안 제18조 제2항).

3.3.5 야간수상레저활동 금지(법 제21조)

법 제21조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 중 조난 등 사고 발생시 사고해점을 쉽게 식별하고, 구조자들이 사고위치를 쉽게 확인하는 등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안 제19조에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장비 1. 항해등 2. 나

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부환 7. 소화기 8. 자기점멸등의 8가지에 9. 위성항법장치(GPS) 10. 구명동의등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추가하였다(시행규칙안 제19조).

3.3.6 주취중 조종금지(법 제22조)

법 제22조에서 주취중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원활히 단속하기 위하여 내수면에서의 단속권한을 현행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서 육상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일반사법권으로 원래 육상경찰공무원도 단속권한이 있으나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견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증을 시·군·자치구(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증표로 규정하여 ‘경찰공무원증’이라고 명문화 한 것이다(시행규칙안 제21조).

3.3.7 정원초과금지(법 제24조)

법 제24조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초과 금지조정의 신설에 따라 정원초과의 대상 및 산출기준을 정하여 무리한 과승으로 인한 수상레저활동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정원을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해난구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로 탑재한 인원은 예외로 하여 구조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시행령안 제19조).

3.4 안전관리

3.4.1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운영(법 제29조)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관계 행정기관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원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은 1.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관련 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 중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였다.

동 협의회는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 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및 단체의 견의사항, 기타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안 제20조).

3.5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3.5.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이 개정안은 등록대상을 현행 선박법에서 제외되어 검사 등이 배제된 「선외기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로 하 고, 한시적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농선(農船)·작업선·운반선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전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신청시 「안전검사증」을 첨부하게 하여 안전검사를 득하지 않고서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전검사를 강제하고자 하였고,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하여 소유권 증명에 이견이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른 하위규정으로 말소등록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동법 시행령안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1. 추진기관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단, 선내기를 제외한다) 2. 수상오토바이 3.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안 제23조).

위에서 규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1. 양도증명서 그 외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의 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단, 등록의 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서에 해당 제3자가 기명 및 날인을 했을 때는 제외한다)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자료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수상레저기구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면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수상레저기구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령안 제24조).

②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의 변경(공유의 경우, 그 지분), 소유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 주소의 변경,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조). 변경등록을 위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령안 제25조, 시행규칙안 제23조).

③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와 수상레저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당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시행규칙안 제24조).

3.5.2 보험가입(법 제34조)

레저활동의 주 수요계층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20~30대임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책임보험을 의무화하여 사고발생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가 신설되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일부 고무보트는 보험가입 의무를 배제하여 레저활동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예외를 두었다.

보험대상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로 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Inflatable Rubber)는 제외한다(시행령안 제26조).

3.5.3 등록번호판의 부착(법 제35조)

일반 선박이나 어선과는 달리 수상레저기구는 선명표기의무가 없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 및 사업자 소유의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자동차번호판과 유사한 식별 번호판 부착의무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그 세부규격을 규정하였고,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규격으로 제작된 등록번호판을 수상레저기구의 옆면 또는 뒷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등록번호판의 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의 기준

을 규정하였다(시행규칙안 제25조).

3.5.4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법 제36조)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안 제25조에서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 「법 제36조에 의한 변경승인」 「소유법인 변경」 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너비·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추진기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 레저활동의 안전확보를 위해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신청서에 안전검사증,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도면 기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안 제26조).

3.5.5 안전검사(법 제37조)

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등록의 전제조건(정원의 산정 등)으로서 등록대상과 동일하게 하고, 일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안전법상의 선박검사와는 다른 간이한 검사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안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① 안전검사의 대상 및 방법(시행규칙안 제27조)

개인레저기구 안전검사제도의 신설에 따라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 5마력 이상의 모토보트(단, 선내기를 제외한다),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의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 총톤수 측정 또는 주요존법의 확인, 정원산출 기준 등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당해 기간 내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규칙안 제27조).

② 안전검사의 신청(시행규칙안 제28조)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받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도면(구조가 동일한 구조의 수상레저기구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한다), 검사대상 장비명세서,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대상인 경우)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증을 교부받는다(시행규칙안 제28조).

③ 안전검사의 일부면제(시행규칙안 제29조)

안전검사의 면제대상은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2.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 3.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4.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다. 다만, 1 내지 2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3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시행규칙안 제29조).

3.5.6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법 제38조)

안전검사대행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령안 제28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안 제30조에서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였다.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법 제14조의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대행기관"은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안전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행한다.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및 절차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시설·장비기준, 점검·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8조).

3.6 수상레저사업

3.6.1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신청 및 휴·폐업 신고(법 제39조, 제42조)

수상레저사업 형태의 다양화 추세로 인해 획일적 등록기준 적용이 곤란함으로 합리적인 수상레저사업과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수심·수세·운항거리·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안 제31조).

또한 계절적 수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수상레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수기 이후 실질적인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통해 보험료 및 지방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법 제42조를 신설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안 제33조).

3.6.2 수상레저사업의 보험가입(법 제44조)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법 제44조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개정하여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보험가입 대상과 레저기구 대상을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29조 제1항).

3.6.3 안전점검(법 제45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사업장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안전검사 부담 경감 및 시설물 등 제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안전점검 규정의 신설에 따라 사업장개시 1월 이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안전점검 대상항목으로 1. 시행령안 제2조 제1항 제7호~제16호 규정에 의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정성,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의 적합여부,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의 준수여부, 4.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의 제한 등의 준수여부, 5.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포함)의 자격, 배치기준의 적합여부, 6. 기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0조).

안전점검 규정신설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에 의해 명하여야 하고, 이때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이 행계획서에 수상레저기구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안 제35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하여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수상레저기구의 전면 좌우측 상단에 수상레저기구운항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운항 정지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부착된 수상레저기구운항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없이는 이를 떼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안 제35조).

3.6.4 우수사업장 인증(법 제46조)

국내산업 보호·육성의 기반을 위한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법 제46조의 신설에 따라 인증기준에 필요한 시설 및 인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① 우수사업장 인증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검사생략 규정의 신설에 따라 우수제조 및 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 검사생략기준, 대상, 신청절차 및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준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레저기구에 대한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생략기준을 규정하였다. 우수사업장 인증대상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기구로써 시행령안 제2조 제1항 제1호~16호의 수상레저기구로 한다(시행령안 제31조).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수사업장 인증절차로 우수사업장인증기관신청서에 시행령안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에 관한 규정(이하 "제조규정"이라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정비에 관한 규정상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사업장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항의 당해사업장이 우수사업장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사업장인증서(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류와 정비규정 및 제조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우수제조사업장이 및 우수정비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설비, 시험·자체검사설비를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2조).

② 우수사업장 인증 취소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 취소에 따른 절차 및 세부기준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선·보완명령을 하는 경우에 개선·보완기간, 개선·보완내용, 개선·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수사업장 인증의 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우수사업장 인증의 취소·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우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시행령안 제33조, 시행규칙안 제37조).

3.6.5 형식승인(법 제47조)

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는 신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설정한 안전기준에 제조업체가 적합하게 제조를 할 경우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구의 형식을 승인하는 제도로써 사전적인 안전확보와 규제완화 및 중소조선업체의 활성화 유도하기 위한 법 제47조의 신설에 따라 이와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한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형식승인의 대상 및 면제,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을 신설하였다.

①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지정

형식승인 지정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험·연구 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과 동등이상의 시험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그 신청을 받아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고, 형식승인시험 기준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안 제34조).

②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7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개선·보완명령시에는 개선·보완기간, 개선·보완내용, 개선·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였고,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지하는 때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명하도록 하였다.

법 제47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신청 절차와 방법, 지정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안 제37조, 시행규칙안 제42조).

③ 형식승인의 대상 및 면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시행령안 제2조 제1항 제1호~제16호의 수상레저기구(탈부착하는 선외기를 포함한다)로 하고, 형식승인을 면제받는 대상으로 법 제4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통지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 3.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 4.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수입된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가 있다(시행령안 제35조).

④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1.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한다), 4.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각 2부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여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하는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를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비용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안 제39조).

⑤ 형식승인 및 검정등의 신청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신청 및 형식승인시험신청과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시행령안 제36조).

수상레저기구(선외기관을 포함한다)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신청서에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신청서와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당해 수상레저기구가 시행령안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형식승인서의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안 제38조).

한편 시행령안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신청서를 검정업무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당해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검정합격증명서의 재교부에 관해서는 형식승인증명서의 재교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안 제41조).

⑥ 검정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방법

검정업무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정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검정업무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소재지, 4.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기준, 5. 수수료 기준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검정업무대행기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하여 검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검정업무의 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서에 대행범위 및 대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정업무의 대행기관은 검정을 행한 수상레저기구(선외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검정업무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시행규칙안 제40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신청절차·방법으로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시행규칙안 제42조).

3.6.6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법 제48조)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인명구조요원 등의 자격기준 등이 개정법에서 그 근거를 둘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래프팅가이드 및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등고시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고, 인명구조요원은 등록된 비상구조선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어야 한다. 또 래프팅가이드는 등록한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만큼 배치하여야 하고, 래프팅가이드는 영업중인 래프팅기구별로 1인 이상 탑승하고 인명구조요원은 영업구역 내 위치하여 영업구역내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시행령안 제39조).

4.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 및 도입방안

4.1 의의

(가칭)수상레저기구종합보험은 수상레저기구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보험가입)에서는 “등록대상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의 책임보험 가입규정 신설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안 제26조 규정에서는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상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레저기구 중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다만,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Inflatable Rubber)는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4.2 효용 및 종류

4.2.1 효용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레저시장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형 해양레저쪽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주말여가 활동의 폐리다임이 바뀌면서 해양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레저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레저선박 분야에서만 향후 10년간 1조2천2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해양레저 활동의 대중화 및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가칭)수상레저기구종합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수상레저기구의 이용범위가 크게 확대되면 당연히 수상레저기구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여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은 물론 재산적 피해도 많아져서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수상레저기구는 다른 소비재 보다 비교적 고가품이며, 이러한 수상레저기구가 운행하는 곳이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진다. 해상에서의 레저활동은 세심한 주의를 다하더라도 언제라도 사고와 재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가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비책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가칭)수상레저기구종합보험이다.

4.2.2 종류

(가칭)수상레저기구종합보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 따라 선체보험, 탑승자상해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수색구조비용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체보험은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인 보험가입대상 수상레저기구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기간 중에 충돌, 좌초, 화재, 침몰 등의 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발생한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물건보험이다.

탑승자상해보험은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가 부상당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의 원인을 수상레저기구 사고로 한정하는 상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수상레저기구의 운행 또는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제3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부상당하게 한 경우에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여 주는 책임보험이다.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수상레저기구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수상레저기구 및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가 조난을 당한 경우 당해 수상레저기구 및 탑승자가 다른 선박에 의해 수색 또는 구조되거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사고로 침몰 등의 전손이 되었을 경우의 선체잔해철거비용보험과 연료유의 유출로 인한 수면청소비용보험 등을 들 수 있다.

4.3 도입방안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해양레저활동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도 수상레저기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자연을 상대로 하는 해상에서의 레저활동은 세심한 주의를 다하더라도 언제라도 사고와 재난에 노출될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가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재난이라는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비책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가칭)수상레저기구종합보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보험상품은 판매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가능한 한 빨리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수상레저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여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강

제적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개발이 가장 시급할 것이며, 아울러 손해액이 강제보험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지급하기 위한 임의적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개발도 고려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

둘째, 수상레저기구는 다른 소비재 보다 비교적 고가품이기 때문에 수상레저기구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선체보험, 충돌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대물배상책임보험, 해상에서의 레저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감한한 수색구조비용보험의 개발에 대해서도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2005년 3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와 수상레저활동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관하여 신설한 점이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는 그동안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형동력선박에 대한 등록과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형선박제도를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의 개정과 적용대상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선박법에서는 동 법 제1조의2 정의규정에서 “선체 밖의 추진기관을 설치한 선외기 선박을 기선에 포함”시키고, 제26조(일부 적용선박 제외)에서 선적증서와 선박등록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선박법상 추가 등록대상선박으로 선외기를 포함한 모든 기선, 추진기관이 장착된 범선(단, 5톤 미만의 범선 중 추진기관이 장착되지 않은 범선은 제외한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선박법이 개정될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 스쿠터 등 만이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등록대상이 되며, 선외기를 포함한 모터보트, 고무보트, 동력요트, 호버크래프트 등은 개정선박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결과가 된다.

한편 2006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선박안전법은 개정 수상레저안전법과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 제2조 제1호(선박의 정의)에서 “신설된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 및 구조물” 및 제3조(적용범위) “군용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의 적용 확대”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현행 선박안전법상 2톤 미만의 동력선과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요트, 선외기 및 2톤 미만의 모든 선박 등을 선박안전법상 검사대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선박법의 경우 이미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등록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대국민차원의 행정서비스와 입법체계상의 목적과 논리에 근거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에 활용되는 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그 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입법목적상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선박안전법이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검사대상인 수상레저기구가 모두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이미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의 '안전검사제도'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행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형선박에 대해서 최대승선인원, 항행상의 조건 등의 제한을 하여 해상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지만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규정'은 일반선박에 대한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법간의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선박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적용되어야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안전검사기관과 관련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에서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현재 개인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관하여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타당하나 실체적으로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실정

이며, 가능한 빨리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보험상품 개발시에는 보험가입의 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강제적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개발뿐만 아니라 강제보험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지급하기 위한 임의적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개발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체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해상 레저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수색구조비용보험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1. 강동수(2003), 선박의 등기와 등록제도 일원화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11호, 해사법학회.
2. 김진선(2004),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해양개발 기본계획, 수상레저산업에 관한 워크샵자료.
3. 남광률(2004), 선회기선박의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해양안전 2004년 여름호.
4. 목진용·박용욱(2002), 수상레저사업의 법제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반석호·김상현(2002), 국내 해양레저와 레저선박 산업의 현황 및 전망, 대한조선학회지 제39권 제1호.
6. 선박검사기술협회(2004),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7. 한국중소조선기술연구소(2003), 해양레저산업 전수조사 보고서.